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대표 장우정 외 2명으로부터 주민발의청구안(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의함.

3. 주요내용

- 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과 충청북도의 인재양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일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다. 학자금 지원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충청북도는 학자금 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매회계년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제정개요

제정조례안은 1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과 충북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제정조례안은 1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

를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의 설치(안 제3조)

- ▶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 기금조성(안 제4조)

- ▶ 충청북도의 출연금, 충청북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 ▶ 충청북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9조, 제10조)

-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

○ 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12조)

- ▶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
- ▶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 기금지원의 지급시기

- ▶ 수급자의 이자 납부기한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지급
-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음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충청북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취지라고 판단됨.

그러나 조례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1. 조례 상위법령 오류의 문제

2009년 5월 7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중 학자금 지원에 관한 법령이 삭제되었음. 특히 본 조례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와 같은 조 제5호에서 인용된 조항은 삭제되었음.

따라서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서 인용되어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야 함.

2.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와 수혜대상의 광범위 문제

현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음.

시·도	조례명	공포일	제안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09.7.15	의원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의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09.7.17	시장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지원기금 조성)	9월회기	주민발의
전라남도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09.5.20	의원 (수정가결)
전라북도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08.12.15	의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09.5.7	도지사 (수정가결)

현재 전라북도를 최초로 하여 전라남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5개 시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심사보류 되었음. 그리고 충청북도와 울산광역시가 9월 회기 중 주민발의안으로 조례가 회부되어 있음.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5개 시도의 경우 학자금 이자지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전라북도는 현재 1학기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중이며, 2억원의(1학기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음. 경상남도는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월 1차로 1억6천만 원을 지급하였음.),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시도는 없음.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자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이자지원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의 문제

학자금 이자지원 수혜대상과 지원금액도 조례 원안대로 집행할 경우, 집행부 예산에 따르면 33,426명에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지원금액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수혜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지급시기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집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함.

5.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7.30)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과부, 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운영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2009년 정기국회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도입시행할 예정임.

이 제도에 따르면 2010 신입생부터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업후 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되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중앙정부 정책의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충청북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취지라고 판단되나,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